

문서번호	지침-경영-25
배포번호	사내게시용
관리부서	산업안전보건팀

폐기물 관리지침



(주)제주항공

개정요약

관리부서	산업안전보건팀
제,개정권자	경영지원본부장
문서 번호	지침-경영-25
제정 일자	2018.3.5
시행 일자	201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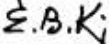
[illegible]

환경경영방침

제주항공은 친환경 경영활동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우선의 가치로 인식하며, 글로벌 항공사로서 당사의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의 실행에 역점을 둔다.

- 국내외 환경·에너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 기후 환경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신항공사기 도입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운항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와 성과 개선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
- 고객 및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생적 환경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친환경 경영활동 정보와 성과를 대내외에 공개하고 모든 임직원이 실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다.

2022.0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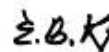
(주)제주항공 대표이사 김 이 배 

Green Management Policy

Jeju Air recognizes green management activities as the top value for fulfilling our social responsibilities, and as a global airline, focus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followings to mitigate our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contributes to sustainable global environment protection.

- Jeju Air strictly complies with all applicabl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s, regulations and obligations related to environment and energy.
- Jeju Air perceives the gravity of climate change, and sets objectives and targets for continuous improvement o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 Jeju Air continues to invest in introducing new aircraft and to improve operation practices including more eco-efficient flight procedures.
- Jeju Air strives to mitigate environmental impact through resource and energy conservation, proactive measures and constant improvement in our performance.
- Jeju Air pursues and deepens close collaborations with all stakeholders including customers, service providers and local communities to execute green management activities towards a more sustainable future.
- Jeju Air ensures to be transparent by openly sharing our commitments and performance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and to provide appropriate training and education to all employees at regular intervals to be environmentally responsible.

2022.04.01 CEO E-Bae Kim
Jeju Air, Co., Ltd.



JEJUair

2022.04.01(Rev.0)

<목 차>

제1장 총칙	5
1.1 목적	5
1.2 적용범위	5
1.3 용어의 정의	5
 제2장 조직과 직무	6
2.1 산업안전보건팀(환경안전담당자)	6
2.2 정비품질팀(지상안전담당자)	6
2.3 인천정비팀(폐기물관리자)	6
2.4 발생부서(팀/파트 폐기물관리자)	7
2.5 지점(김포, 인천지점 제외)	7
 제3장 업무절차	8
3.1 폐기물 배출	8
3.2 폐기물 보관	8
3.3 폐기물 처리와 위탁 처리업체 관리	9
3.4 모니터링(Monitoring) 및 기록	10
 [별표] 사업장 폐기물관리대장	11

제 1 장 총 칙

1.1 목 적

본 지침은 제주항공(이하“회사”라 한다)의 활동 및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환경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 및 처리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회사(협력업체 포함)의 활동 및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 가.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등으로서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불필요한 물질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 나.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 다.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라.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마. 의료폐기물 :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바. 처리 :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와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
- 사.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재상 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상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 아.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 2 장 조직과 직무

2.1 산업안전보건팀(환경안전담당자)

산업안전보건팀 환경안전담당자는 폐기물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지도하며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 가.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 적법성 여부 확인
- 나.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선정 및 계약
- 다.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처리업체 전달
- 라. 폐기물 인·허가 관리 및 대외기관 환경점검 수검
- 마. 국내지점 폐기물 관리 지원 및 자체점검
- 바.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신고 등 폐기물 관련 대외기관 요청자료 제공
- 사. 폐기물 관리자 법정 교육 및 자체 환경 교육 실시
- 아. 전년도 국내지점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 자. 관련법령 모니터링 및 기준설정 통보

2.2 정비품질팀(지상안전담당자)

정비품질팀 지상안전담당자는 정비본부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행하며 산업안전보건팀 환경안전담당자를 지원해 국내지점의 폐기물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가. 김포공항 지정폐기물 수거차량 현장안내 및 동행
- 나. 김포공항 지정폐기물 전자인계서 관리 및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 다. 국내지점 지정폐기물 처리내역 전표처리
- 라. 폐기물관리대장 등 관련문서 작성 및 관리
- 마.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2.3 인천정비팀(폐기물관리자)

인천정비팀 폐기물관리자는 인천정비팀장이 임명하며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 가. 인천공항 폐기물 전자인계서 관리 및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 나. 인천공항 폐기물 수거차량 현장안내 및 동행
- 다. 폐기물관리대장 등 관련문서 작성 및 관리
- 라. 감독기관의 지도점검 대응
- 마. 폐기물보관소 정리·정돈
- 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2.4 발생부서(팀/파트 폐기물관리자)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내 폐기물 발생부서는 자체적으로 담당자를 임명하고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발생한 폐기물의 수거 및 성상별로 분리보관

나. 폐기물 보관소 정리·정돈

다. 신규 폐기물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팀에 처리 관련 문의

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2.5 지점(김포, 인천지점 제외)

지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체적으로 폐기물관리자를 임명하고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폐기물위탁처리업체 처리의뢰 및 폐기물 전자인계서 관리

나. 폐기물관리대장 등 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다. 폐기물처리실적 등 관련기관 보고 및 감독기관 지도점검 수검

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제 3 장 업무절차

3.1 폐기물 배출

폐기물 발생부서는 발생한 폐기물 중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하여 폐기물의 양을 감소한 후, 지정된 폐기물보관소에 성상 별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배출부서는 지정된 폐기물 보관장소까지 폐기물 운반 시 누출 또는 비산되지 않도록 별도의 운반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나. 비정상 및 새로운 활동 등으로 인해 신규 발생한 폐기물은 발생부서에서 산업안전보건팀 환경안전담당자에게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하여야 한다.

다. 당사에서 발생하는 종류 및 분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종 류	중분류	내 용
지 정 폐기물	폐 유	폐윤활유(액상)	항공유, 오일
		폐윤활유(고상) 그 밖의 폐광물유 (고상)	오일통, 기름걸레, 장갑 등
	폐유기용제	폐유기용제	형광침투액, 엔진크리닝액
	폐유성페인트	폐유성페인트	폐사
일 반 폐기물	폐합성수지	기내폐기물	기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공장쓰레기	공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	기내음식물	기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음식물이 묻은 용기 등

3.2 폐기물 보관

지정폐기물은 각 지점 내에 지정된 폐기물 보관장소에 성상 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을 옥외시설 또는 용기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우수 내지 지표수 등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며, 보관시설 바닥은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나. 보관장소에는 쥐, 파리, 모기 등과 같은 해충이 번식하지 아니하도록 약제살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지정폐기물 보관장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며 드럼 등의 보관용기를 사용할 경우 용기 별로 보관표지판을 부착한다.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의 종류:	②보관가능용량:
③관리책임자:	④보관기간: ~ (일간)
⑤취급 시 주의사항 ☐ 보관 시: ☐ 운반 시: ☐ 처리 시:	
⑥운반(처리) 예정장소:	

※ 바탕색 : 황색 / 글자 및 선 : 흑색 / 규격 : 가로 60cm X 세로 40cm 이상
(드럼 등 소형 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cm x 세로 10cm 이상)

라. 폐기물 발생부서는 폐기물관리자를 지정하여 지정폐기물 보관장소를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3 폐기물 처리와 위탁 처리업체 관리

폐기물은 사업장, 지정, 재활용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준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부서는 위탁 처리한 폐기물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가. 비정상적인 폐기물 발생 시 해당부서는 산업안전보건팀 환경안전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나. 산업안전보건팀 환경안전담당자는 통보 받은 비정상적인 폐기물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도록 지도·조언한다.

다. 산업안전보건팀 환경안전담당자는 위탁처리업체 선정 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환경관련법에 적법한 처리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정비본부에 통보한다.

- 1) 환경사고의 잠재적 발생 가능성 및 적법한 처리가능 여부
- 2) 폐기물 처리업체의 법적 등록사항 충족 여부
- 3) 폐기물 처리능력과 해당 폐기물 처리가능 여부
- 4) 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상태
- 5) 기타 인허가상에 법적 하자가 없는 업체

라. 국내 각 지점의 지점장들은 폐기물 위탁 처리업체를 계약하거나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팀 환경안전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처리업체가 신규로 계약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팀 환경안전담당자는 처리할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달하여야 한다.

바.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1) 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2) 수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단가
- 3) 폐기물의 종류, 성상, 취급 시 유의사항, 처리방법,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사항
- 4) 계약기간 중 수탁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위탁자에게 즉시 통보의무

5) 계약기간 중 적정 처리를 보장하는 위탁자의 요구사항

- 사. 산업안전보건팀 환경안전담당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를 방문하여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발견 시 시정조치 요구 및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아. 지점의 폐기물관리자는 폐기물보관소에 폐기물이 많이 모였을 경우 위탁처리 계약을 맺은 업체에 연락하여 폐기물 처리를 요청하고 위탁 처리업체가 공항 방문 시 운전기사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현장을 안내하며 처리량을 기록한다.
- 자. 위탁처리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 system)에 접속하여 전자인계서를 발행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전자인계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출력하여 보관한다.
- 차. 각 지점 폐기물관리자는 폐기물보관소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Monitoring하여야 한다.

3.4 모니터링(Monitoring) 및 기록

- 사업장 폐기물관리대장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관한 관공서에 폐기물 배출신고를 완료한 지점은 처리실적을 매년 집계하여 2월 말까지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 가. 지점의 폐기물관리자로 선임된 인력은 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하며 전년도 처리실적 등의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산업안전보건팀 환경안전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나. 폐기물 배출신고가 되어있는 지점의 폐기물관리자는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당해 연도 2월 28일까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 system)을 통해 제출하며 산업안전보건팀의 환경안전담당자는 이를 모니터링 하며 필요시 각 지점 폐기물관리자를 지원한다.
- 다. 산업안전보건팀 환경안전담당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등 대외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기한 내에 신고한다.
- 라. 폐기물 발생부서(지점)는 폐기물의 분리, 보관상태를 수시로 점검·관리한다.

